
사고 대응 매뉴얼

1. 목 적

- 임상실습, 교내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학생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,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대응을 위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적용 범위

- 1) 교내실습
- 2) 임상실습
- 3) 학생인권보호

3. 활용

- 1)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확대방비를 위한 대응 활동
- 2)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고종류에 맞는 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과 훈련의 자료로 활용
- 3)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처치

4. 사고대응 기본 지침

- 1)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
- 2) 피해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
- 3)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보고할 것
- 4)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(소방서, 경찰서 등)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할 것

2장

교내실습 관련 학생안전 관리체계

1. 실습실 안전관리

- 1)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 시 또는 수업 전 안전교육, 감염교육, 인권교육을 듣고 준수한다.
- 2) 비상시 행동요령 수칙을 준수한다(실습실 내 비치).

응급환자 발생 시

- 119에 전화하여 구조를 요청한다.
- 필요한 응급조치를 수행한다.
- 책임교수나 가까운 장소의 사람에게 연락하여 협조를 요청한다.

화재 발생 시

- 화재경보기를 작동한다.
- 구내 119로 화재를 신고한다(또는 구내 4119, 소방서119)
- 화재를 쉽게 끌 수 있을 경우 소화기를 사용하여 끈다.
- 화재가 발생한 방의 문을 닫는다.
- 건물 안의 사람을 대피시킨다.
- 인화물질을 격리시킨다.
- 실험기기의 전원을 차단시킨다.

비상시를 대비한 확인사항

- 가장 가까운 전화기의 위치
- 소화기의 위치
- 화재경보기의 위치
- 비상구의 위치
- 전원차단 스위치의 위치

- 4) 실습실 담당교수와 조교는 실험·실습실에서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안전수칙이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5) 사용한 기자재는 실습이 종료된 후에 점검하여 보관한다.
- 6) 실습실 담당교수는 실습 교과목 운영에 대한 사용일지를 전산에 입력한다.
- 7) 교내실습 시 보고상황이 발생한 경우 재난안전관리 보고체계를 따른다. 부록1

1. 실습 전 사전 점검사항

- 1) B형간염 항체 유무 : HBV Ab(+)의 경과를 확인하고 실습에 임한다.
 - 항체가 없는 경우 : 예방접종 1cycle(3회) 접종 후 항체 생성됨을 학과사무실에 알린다.
 - 1cycle을 시행하고도 항체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 : 다시 1cycle을 시행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도 반복되면 의사 진료 후 판단한다.
- 2) 실습 중 사건 발생과 관련된 대상 질환
 - 혈액매개 질환 : B형간염, C형간염, 매독(syphilis), HIV 감염증
 - 노출이나 질환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.

2. 안전관리 주의사항

- 1) 실습학생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Needle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유해물질, 혈액, 화학약품 및 항암제 등이 쏟아지면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병원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 - 부록2 주사침 자상 발생 시 취해야 하는 조치
- 2) 눈이나 점막에 환자의 분비물, 이물질, 소독제가 들어가면 즉시 병원 규정에 따라 세척한다.
 - 부록3 눈세척 매뉴얼
- 3) 검사실 방문 시 해당 검사실의 안전수칙을 사전 문의하고 지시사항을 숙지한다.
 - 예 영상의학과, 혈관조영실의 방사선 피폭 방지용 특수가운 착용
- 4) 임상실습 시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환자확인(동명 2인, 유사한 이름)은 두 가지 이상의 질문으로 철저하게 확인한다.
- 5) 임상실습 장소에서 낙상이나 미끄러짐(바닥의 물)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면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.

3. 감염관리 주의사항

- 1) 손 위생(적응증과 손 위생 방법 알기), 기침예절을 준수한다.
- 2) 무균술 준수
 - ① 요로 카테터, 말초혈관 카테터 삽입 시 감염관리지침 준수한다.
 - ② 알코올을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 입으로 불거나 손으로 부채질하지 않도록 한다.
- 3) 주사침 찔림이나 날카로운 기구 베임 주의
 - ① 주사침전용용기 사용(recap 금지), 혈당체크 후 lancet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한다.
 - ② 혈액매개감염질환자(HIV양성, B형 간염, C형 간염, 매독)의 혈액 및 체액 노출 주의한다.
 - ③ 접촉, 찔림, 눈/입 점막 노출 등 → 노출 즉시 부서실습책임자(학교, 병원)에게 보고한다.
- 4) 격리병실 출입 시 개인보호구 착용과 제거 준수. 특히, 공기매개 감염질환자(활동성 결핵, 홍역, 수두)의 격리병실 출입은 자제하고, 출입 시 주의지침 확인하고, 개인보호장구를 착

용한 상태에서 출입한다.

5) 실습생이 감기, 독감, 피부질환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역격리 환자 병실의 출입을 금지한다.

6) 폐기물관리 준수: 알코올솜, 수액세트, 주사기 등의 철저한 분리수거

● 예 일반쓰레기통에 알코올솜 폐기 금지

7) 위생관리: 손톱 길이는 짧게 하고, 팔찌 등 악세사리 착용 금지 및 간호처치 중 머리카락 오염 주의한다.

8) 일반적 감염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실습한다.

4. 임상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

1) 임상실습 시작 전에 실습 학생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2) 비상사태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한다.

3)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안전 및 감염예방대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.

4) 임상실습 현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감염성 질환(수두, MMR, B형 간염 등)의 항원, 항체 보유 유무를 확인한다.

5) 감염성 질환(결핵)등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시행한다.

6) 감염성 질환 예방접종 등의 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접종을 하도록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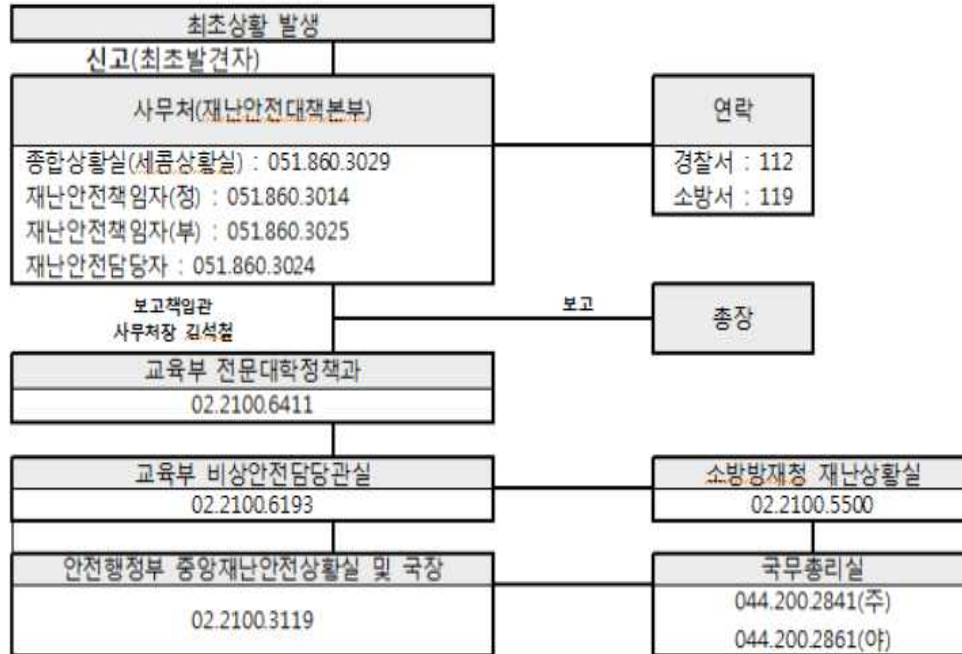
7) 실습 중 감염성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실습 담당교수와 임상현장지도자에게 보고한다.

8) 실습 전, 중, 후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안전사고 보고체계[부록4]에 따라 실습 담당교수와 임상현장지도자에게 보고하며 필요시 사고보고서[서식1]를 제출한다.

9) 실습 중 실습기관의 기물 파손 및 손실이 있을 경우 즉시 실습 담당교수와 임상현장지도자에게 보고한다.

- 학과는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.
-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실습교육에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
- 학생은 실습 중 어떤 상황에서도 인격적인 모욕을 받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학생 또한 타인을 모욕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.
- 학생의 안전과 인권에 위험성이 높은 술기에 대해서는 학생을 통한 실습교육을 지양하고 간호술기모형으로 대체하여 실습한다.
- 학과에서 해당 실습기관에서 시행해야 할 학생들의 역할과 실습 가능한 범위를 고지하고 실습학생은 실습기관에서 필요 이상의 불합리한 요구를 할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다.
- 학생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, 피해학생이나 대리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인권침해의 처리를 원하는 경우 서면, 전화,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학과장 및 지도교수에게 상담 및 인권침해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.
-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인권침해 처리신청을 받은 경우,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한다.
- 피해학생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. 또한 피해학생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,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.
- 학과교수회의를 통해 조사된 사건을 심의하여 대학인권위원회규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
- 학과는 학과교수회의를 통해 보고된 학과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하여 개선활동 및 예방계획수립에 활용한다.

최초발견자→실습지도교수/실습조교→학과장→사무처(재난안전대책본부)



- ① 즉시 흐르는 물에 혈액을 짜내고 알코올솜으로 닦는다.
- ② 임상실습현장지도자 및 실습지도교원에게 보고한다.
- ③ 실습병원(내과, 감염내과, 가정의학과)에서 바로 진료를 받되, 공휴일 이나 정규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·검사·처리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는다.
- ④ 발생한 진료비는 자비로 지출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여 차후 보험처리 시 제출하도록 한다.
- ⑤ 진료 후 임상실습현장지도자 및 실습지도교원에게 결과를 보고한다.
- ⑥ 사고경위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고 차후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.

Eye Wash

눈에 혈액 및 체액, 항암제·유해화학물질 등의 위험물질이 튀었을 경우에 사용

- 사용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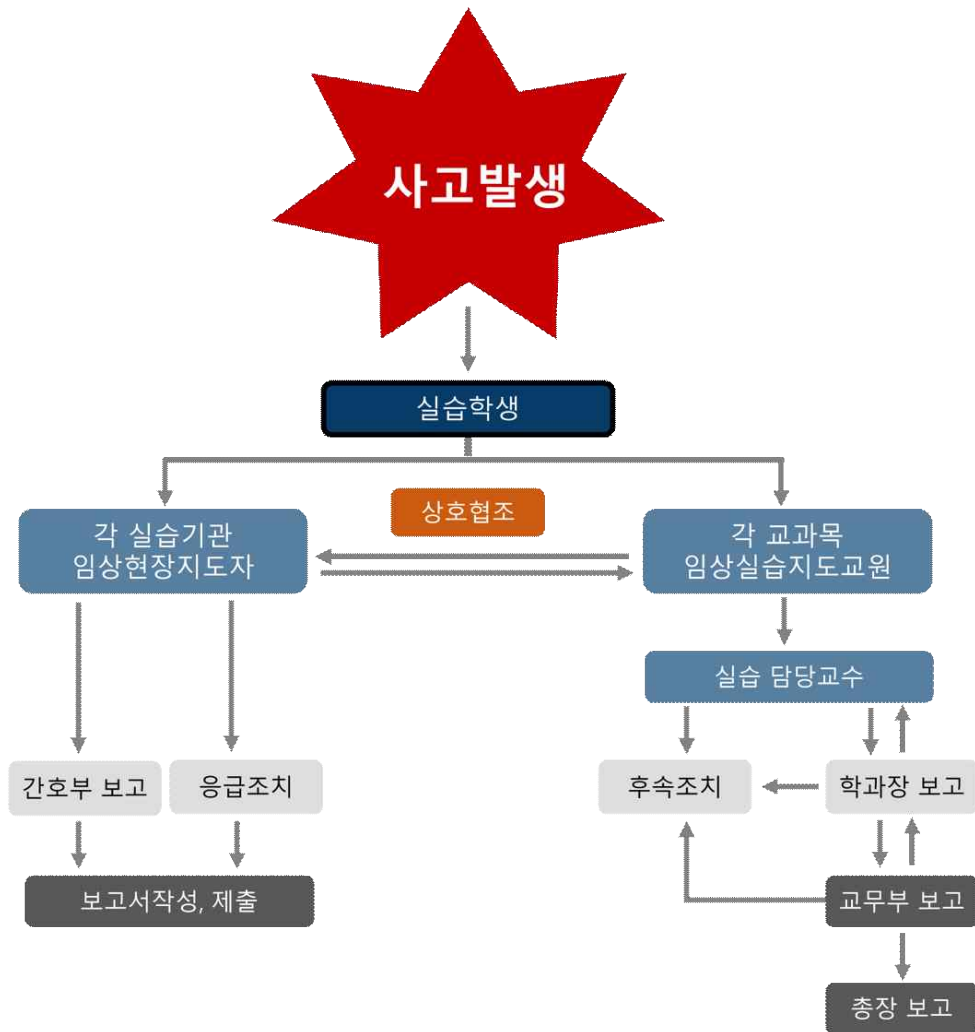
1. 사용 전 적절한 온도(따뜻한 정도)와 수압을 확인한다.
2. 위험물질이 튜 부위를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세척한다.
3. 15분 이상 충분히 세척한다. ※콘택트렌즈는 제거 후 세척하세요.



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세척



안전사고 보고체계



사고 보고서

임상현장 지도자	담당교수	학과장

()학년 () 반 학번 : _____

성 명 :

사고 일시 :

사고 경위 :
(6하원칙에 의거 작성)

20 년 월 일

동 의 과 학 대 학 교 총 장 귀 하